

[별표 5] <개정 2012.1.26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9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1호	30	50	100
나.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87조제1항 제1호	500	700	1,000
다.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·수입·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	법 제87조제2항 제1호	200	250	300
라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	법 제87조제2항 제2호	200	250	300
마.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2항 제3호	300		
바.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2호	50	70	100

사.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 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87조제2항 제3호의2	300	300	300
아. 법 제21조제5항(법 제50조,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 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2항 제3호의3	300	300	300
자. 삭제 <2011.6.8>				
차. 삭제 <2011.6.8>				
카. 삭제 <2011.6.8>				
타. 법 제23조제2항(제50조에 따라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 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2항 제4호	100	200	300
파. 법 제29조제3항(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)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 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 또는 전용 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4호			
1)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 다)		80	90	100
2) 전용상수도 설치자		50	70	100
하.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2항 제5호	200	250	300
거. 법 제32조제3항(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)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 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 또는 전용 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	법 제87조제3항 제5호			

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				
1)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		80	90	100
2) 전용상수도 설치자		50	70	100
너.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6호	10	50	100
더. 법 제36조(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7호			
1)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		30	40	50
2) 저수조청소업자		50	70	100
3) 일반수도사업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		50	70	100
러. 법 제39조제2항(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8호	50	70	100
머. 법 제45조(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2항 제6호	200	250	300
버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	법 제87조제2항 제7호	300	300	300

서.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 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가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 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7조제3항 제9호			
1)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치자가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		100	100	100
2)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	50	70	100